

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3월 일

발의자 : 강성삼 의원

1. 제안이유

가. 본 개정안은 현행 「하남시의회 회의규칙」 중 일부 조항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항의 번호를 정확하게 수정하여 규칙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 이를 통해 법제의 통일성 및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.

나. 본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발의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개정 조항 반영(안 제62조~ 안 제101조)

3. 검토의견

가. 입법 필요성

- 현행 「하남시의회 회의규칙」에서 일부 조항이 잘못된 조항 번호를 인용하고 있음. 이는 규칙 적용 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, 이를 수정하여 규칙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. 본 개정안은 이러한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한 기술적 조치임.

나. 입법 적정성

- 본 개정안은 단순한 조항 번호 오류를 수정하는 것으로, 새로운 정책 도입이나 예산 수반 사항이 아니므로 예산 및 사회적 영향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. 아울러 규칙의 명확성을 높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됨.

다. 법적 타당성

- 「지방자치법」 제8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며, 따라서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회의에 관하여 회의규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으므로 입법 타당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라. 결론

- 본 개정안은 규칙 내 조항 간의 연계성을 바르게 정립하여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. 검토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됨.

참고자료(개정안)

하남시의회규칙 제 호

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2조제5항 전단 중 “제60조제1항”을 “제61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62조의3제3항 중 “제61조의2제2항”을 “제62조의2제2항”으로 한다.

제75조제3항 중 “제70조제3항”을 “제71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76조 전단 중 “제70조부터 제74조”를 “제71조부터 제75조”로 한다.

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 호의 1”을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97조제1항 중 “제95조”를 “제96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제95조제2항”을 “제96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01조 중 “제95조부터 제99조”를 “제96조부터 제100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2조(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) ① ~ ④ (생략) ⑤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절차는 <u>제60조제1항</u>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제안자”는 “청구인의 대표자 등”으로 본다.</p>	<p>제62조(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<u>제61조제1항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62조의3(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) ①·② (생략)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 절차는 <u>제61조의2제2항</u>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제62조의3(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<u>제62조의2제2항</u> ----- -----.</p>
<p>제75조(결산의 심사) ①·② (생략)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<u>제70조제3항</u>을 준용한다.</p>	<p>제75조(결산의 심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제71조제3항</u> -----.</p>
<p>제76조(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)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</p>	<p>제76조(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) -----</p>

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 이 경우“예산”은“기금운용계획(기금운용계획변경)”으로, “결산”은 기금의 결산”으로 본다.

제91조(방청의 제한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제97조(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·부의 시한) ① 제95조에 따른 징계의 회부는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,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일시 또한 같다.

② 제95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,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

----- 제71조부터 제75조-----.

제91조(방청의 제한) ① --- 각 호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97조(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·부의 시한) ① 제96조-----

② 제96조제2항-----

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폐회기간 중에 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기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제101조(윤리심사의 요구 및 회부 등)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의 요구 및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

-. -----

-----.

제101조(윤리심사의 요구 및 회부 등) -----

- 제96조부터 제100조-----
-----.